

#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

-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, 당규 개정안 -

2026. 2. 11.(수) 14:30



##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

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(2026. 2. 11.)

### I. 의결주문

-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II. 의결(안)

구 분	주요 내용
제 19 조 제 98 조	○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4인 이상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위해 사퇴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
제 28 조	○ 당 대표 선출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경우,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개시일과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개시일 일치
제 43 조	○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 명확화
제 45 조	○ 상설위원회에 「2030쓴소리위원회」 및 「미디어위원회」 신설 ○ 인권위원회의 산하의 「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」를 상설위원회로 격상
제 87 조	○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치구·시·군의 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사·도의원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정
제100조 제100조의2	○ 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와 비대면 회의체 특례에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제외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(당헌)

### 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, 제92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강령·기본정책·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

[당헌 제92조(개정의 발의)]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(당헌)

현행	개정안
<p><b>제 19 조 (기능) ①</b>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</li> <li>2.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</li> <li>3.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</li> <li>4.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. 단, <u>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궐위 시에는 제외</u></li> <li>5.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</li> <li>6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</li> </ol>	<p><b>제 19 조 (기능) ①</b>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</li> <li>2.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</li> <li>3.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</li> <li>4.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. 단, <u>당헌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</u></li> <li>5.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</li> <li>6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</li> </ol>
<p><b>제 28 조 (임기)</b>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28 조 (임기) ①</b>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<u>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,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개시일은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개시일과 동일하게 한다.</u></p>
<p><b>제 43 조 (구성)</b></p> <p>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위원장을 포함한</u>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구성)</b></p> <p>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재적위원의</u>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 45 조 (상설위원회)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 1~2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45 조 (상설위원회)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 1~27. (생략)</p> <p><u>28.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</u></p> <p><u>29. 2030쓴소리위원회</u></p> <p><u>30. 미디어위원회</u></p>
<p>제 87 조 (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) ① ‘자치구·시·군의 장’ 후보자는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,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<u>다만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.</u></p> <p>② 지역구 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 회의원후보자는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,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</p> <p>③ 비례대표 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시·도당 비례대표</p>	<p>제 87 조 (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) ① ‘자치구·시·군의 장’ 후보자는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,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<u>다만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로 자치구·시·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나, 당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비례대표 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시·도당 비례대표</p>

현행	개정안
<p>공천위원회 포함)의 심사와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&lt;신설&gt; 다만, 비례대표 시·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%이상 포함되도록 하며,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 <p>⑥ <u>시·도당</u>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,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p>⑦ <u>시·도당</u>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. 다만, 경선은 <u>시·도당</u>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⑧ (생략)</p>	<p>공천위원회 포함)의 심사와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 <u>당규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.</u> 다만, 비례대표 시·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%이상 포함되도록 하며,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중앙당 및 시·도당</u>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,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p>⑦ <u>중앙당 및 시·도당</u>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. 다만, 경선은 <u>중앙당 및 시·도당</u>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98 조 (비상대책위원회)</b>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<b>제 98 조 (비상대책위원회)</b>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당 대표 사퇴 등 결위 2.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결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</p>	<p>1. 당 대표 사퇴 등 결위 2.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결위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다만,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위하여 사퇴함으로써 결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</u></p> <p>3.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</p>
<p><b>제 100 조 (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)</b>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 각급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.</u></p> <p>1~4. (생략)</p>	<p><b>제 100 조 (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)</b>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 각급 윤리위원회의 및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.</u></p> <p>1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100 조의 2 (비대면 회의체 특례)</b>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 각급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.</u></p> <p>1~4. (생략)</p>	<p><b>제 100 조의 2 (비대면 회의체 특례)</b>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u>다만, 각급 윤리위원회의 및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.</u></p> <p>1~4.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2026. 2. 12)</p> <p>이 당헌은 2026년 2월 12일 제19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

## 당규 개정안

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(2026. 2. 11.)

### I. 의결주문

- 당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II. 의결(안)

구 분	주 요 내 용
당원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책임당원 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비납부 3개월 → 6개월 (재입당한 경우 최근 입당일 이후에 납부한 당비만을 인정)</li> <li>- ‘연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’ 부분은 삭제 (당원의 의무 중 ‘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’가 이미 당헌에 既명시)</li> <li>- 해당 개정은 6.3 지방선거 경선 선거인단 선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6.7.1부터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당원서에 ‘주소’ 의무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소지 허위 등재로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방지</li> </ul> </li> <li>○ 허위 주소지 등재, 등재된 당원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권리 제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론요구 및 발안 절차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</li> <li>-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책임당원 서명 완료 시 청구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전당원투표 제도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습 입탈당 방지 제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탈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 불가(다만, 정당법에 따른 신분(공무원 등)을 이유로 당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또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)</li> <li>-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6개월간 재입당 신청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
당비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책당비 별지(직책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여성위원회 ‘운영위원회’가 ‘위원장단회의’로 조정됨에 따른 직책 조정</li> </ul> </li> </ul>
전국위원회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4인 이상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위해 사퇴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</li> </ul>

구 분	주 요 내 용
사무처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장단 산하 국·실 및 업무분장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 업무 : 홍보본부장 산하 → 전략기획부총장 산하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변인과 미디어대변인 분리, 미디어대변인 역할 규정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당 사무처 부서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래전략국 및 노동국 신설</li> <li>- 인프라실 삭제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서별 업무분장 정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래전략국 신설로 인한 업무 조정</li> <li>- 청년국 : 2030쓴소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</li> <li>- 국제국 : ‘국제회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’ 추가</li> <li>- 국민소통센터 : ‘약자와의동행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’ 추가</li> <li>- 노동국 신설로 인한 업무 조정</li> </ul> </li> </ul>
윤리위원회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윤리위원 사임·해임 사유, 징계 사유, 절차 명확화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탈당 시 5년간 복당 심사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창 관련 규정을 현행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정비</li> </ul>
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 명확화</li> </ul>
상설위원회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설위원회 신설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약자와의동행위원회’ 확대 개편(시·도당약동위 산하에 당협별 지회 설치)</li> <li>- ‘2030쓴소리위원회’, ‘미디어위원회’ 신설</li> <li>- 인권위원회 산하에 있던 ‘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’를 상설 위원회로 격상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설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외동포위원회, 국제위원회,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, 2030쓴소리위원회, 미디어위원회의 경우 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여성위원회 ‘운영위원회’를 ‘위원장단회의’로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50인 이내 운영위원 구성 등 비현실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의 현실성 제고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국민통합위원회’의 세부 규정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약자와의동행위원회’의 세부 규정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’의 세부 규정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2030쓴소리위원회’의 세부 규정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미디어위원회’의 세부 규정 신설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설위원회별 실무지원부서 명시</li> <li>○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최신화</li> </ul>



구 분	주 요 내 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임규정에 ‘중앙여성위원회’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장단의 협의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
지방조직 운영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총회 운영 규정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초의원총회 : 시도당 단위 설치 → 기초의회 단위 설치</li> <li>- 광역 및 기초의원총회의 대표는 각 의회의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명시</li> <li>- 당소속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장,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각 의원총회에서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
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천신청 직접 접수 → ‘온라인 접수 원칙’으로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정</li> </ul> </li> <li>○ ‘공천신청 서류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 가능’ 추가</li> <li>○ 공천 심사 기준 관련 용어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 기여도 → 당 기여도 평가결과</li> </ul> </li> </ul>
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당 공관위의 후보자 추천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·시·군의 기초단체장</li> <li>- 기타 최고위 의결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의 기초단체장</li> <li>- 비례대표광역의원(공개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)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천신청 직접 접수 → ‘온라인 접수 원칙’으로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정</li> </ul> </li> <li>○ ‘공천신청 서류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 가능’ 추가</li> <li>○ 공천 심사 기준에 ‘당 기여도 평가결과’ 추가</li> <li>○ 공개오디션 등의 경선 방식 신설</li> <li>○ 정량적 경선 가산점 제도 도입 (최대 20점)</li> <li>○ 광역·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인 이상, 청년 1인 이상 추천 의무화</li> </ul>
해당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순 용어 수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탈당권유 → 탈당권고</li> <li>- 중앙대학생위원회 → 중앙당 대학생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특정대학(중앙대학교)과 혼동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</li> </ul> </li> <li>- 시·도대학생위원회 → 시·도당 대학생위원회</li> </ul> </li> </ul>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(당규)

### Ⅲ. 관련근거

#### ○ 당헌 제23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#### 2. 당규의 제·개정 또는 폐지

## 신·구조문 대비표(당규)

### 「 당 규 」 당 원 규 정

현 행	개 정 안
<p>제 2 조 (당원)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·도당에 제출하여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</p> <p>② 책임당원은 <u>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.</u></p>	<p>제 2 조 (당원)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·도당에 제출하여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</p> <p>② 책임당원은 <u>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기간 중 재입당한 경우에는 최근 입당일 이후에 납부한 당비만을 인정한다.</u></p>
<p>제 3 조 (당원의 권리·의무의 발생 및 소멸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3 조 (당원의 권리·의무의 발생 및 소멸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당원명부에 허위로 주소지를 등재 하였거나 등재된 당원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.</u></p>
<p>제 3 조의 4 (토론요구 및 발안권) ①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책임당원은 <u>책임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</p>	<p>제 3 조의 4 (토론요구 및 발안권) ①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책임당원은 <u>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당기구를 서면 또는 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한다.</u></p> <p>④ 제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.</p>	<p><u>하며, 해당 서명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3 조의 5 (전당원투표의 청구) ①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당원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요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전당원투표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특정 개인의 인사 또는 직위에 대한 임명·해임 등 내부 인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여부에 관한 개별 사안</li> <li>4. 당의 재정 운용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한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항</li> <li>6. 기밀 유지가 요구되며, 공개 시 당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책임당원은 전당원투표 안건의 내용을 서면 또는 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당원투표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, 해당 서명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	<p>④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, 해당 안건은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.</p> <p>⑤ 전당원투표는 책임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그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, 그 결과는 해당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전당원투표의 결과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하며, 청구가 기각되었거나, 투표정족수 미달 또는 찬성자 과반수 미달로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전당원투표 청구는 다시 할 수 없다.</p>
<p><b>제 3 조의 5 (교육을 받을 권리)</b>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年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.</p>	<p><b>제 3 조의 6 (교육을 받을 권리)</b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4 조 (입당)</b>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·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입당원서에는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휴대전화번호 &lt;신설&gt;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.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·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4 조 (입당)</b>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·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입당원서에는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휴대전화번호, 주소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.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·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 5 조 (제명·탈당자의 재입당)</b>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(탈당 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는</p>	<p><b>제 5 조 (제명·탈당자의 재입당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. 다만,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·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·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그 이외 광역·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·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<b>제 6 조 (자격심사)</b> ① 시·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·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, 시·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·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</p>	<p>② <u>탈당한 자는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. 다만, 「정당법」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분으로 인하여 당원이 될 수 없었던 자 또는 시·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6 조 (자격심사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·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제5조제2항</u>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·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제5조제3항</u>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.</p> <p>③ <u>시·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.</u></p>
<u>&lt;신설&gt;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2026. 2. 11)</p> <p>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 <p>제 2 조 (책임당원의 권리행사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
## 「 당 규 」 당 비 규 정

현 행	개 정 안						
<p>직책당비 납부기준</p> <p>■ 당직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중앙당</td> <td style="width: 60%;">■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月5萬원이상</td> </tr> </table>	중앙당	■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	月5萬원이상	<p>직책당비 납부기준</p> <p>■ 당직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중앙당</td> <td style="width: 60%;">■ 중앙여성위원회 분과위원장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月5萬원이상</td> </tr> </table>	중앙당	■ 중앙여성위원회 분과위원장	月5萬원이상
중앙당	■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	月5萬원이상					
중앙당	■ 중앙여성위원회 분과위원장	月5萬원이상					
<u>&lt;신설&gt;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2026. 2. 11)</p> <p>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						

## 「 당 규 」 전 국 위 원 회 규 정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 3 조 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</li> <li>2.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</li> <li>3.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</li> <li>4.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. <u>단,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 궐위 시에는 제외</u></li> <li>5.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</li> <li>6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</li> </ol>	<p><b>제 3 조 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</li> <li>2.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</li> <li>3.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</li> <li>4.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. <u>단, 당헌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</u></li> <li>5.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</li> <li>6.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</li> </ol>

## 「 당 규 」 사 무 처 규 정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 2 조 (중앙당 당무집행기구)</b> ① 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, 조직부총장, 홍보본부장을 둔다.</p> <p>②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전략·조직·홍보·인사·재정을 총괄하며, 시·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. 단, 사무총장은 여성정치발전비와 관련하여 중앙여성위원장과 협의한다.</p> <p>③ 전략기획부총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, 인사, 재정, <u>미디어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	<p><b>제 2 조 (중앙당 당무집행기구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전략기획부총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, 인사, 재정, <u>미디어, 국제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조직부총장은 당 조직과 대외협력,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⑤ 홍보본부장은 당의 홍보와 <u>뉴미디어, 국제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p>⑥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기획부총장, 조직부총장, 홍보본부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홍보본부장은 당의 홍보와 <u>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3 조 (대변인) ① 대변인에는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을 둔다.</p> <p>② <u>당 대변인은 당무관련 사항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성명·논평·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.</u></p> <p>③ 원내 대변인은 원내부대표 중 원내 대표가 지명하는 인사로 하며, 국회 운영 및 원내 관련사항에 대한 성명·논평·각종 발표문 및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.</p> <p>④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.</p> <p>⑤ <u>부대변인은 당 대표가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성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당대표가 사퇴</u></p>	<p>제 3 조 (대변인) ① 대변인에는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을 둔다.</p> <p>② <u>당 대변인단은 당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 당 대변인은 당무 관련 사항 및 국정 전반에 대한 성명·논평·각종 발표문 작성과 대언론 활동을 담당한다. 미디어대변인은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여 당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. <u>부대변인은 당 대표가 대변인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.</u></p> <p>⑤ <u>당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당 대표가 정한다. 다만, 당대표가 사퇴 또는 궐위 시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.</u>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<u>등</u> <u>결위 시</u>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.</p>	
<p>제 4 조 (중앙당 사무처의 부서) ① 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획조정국</li> <li>2. 총무국</li> <li>3. 조직국</li> <li>4. <u>인프라실</u></li> <li>5~12. (생략)</li> </ol> <p><u>&lt;신설&gt;</u> 13~21. (생략)</p>	<p>제 4 조 (중앙당 사무처의 부서) ① 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획조정국</li> <li>2. 총무국</li> <li>3. 조직국</li> <li>4. <u>미래전략국</u></li> <li>5~1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3. <u>노동국</u></li> <li>14~22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 5 조 (기획조정국) 기획조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~21. (생략)</li> <li>22. <u>정치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</u></li> <li>23. <u>긴급 현안당무에 관한 대책 수립</u></li> <li>24. <u>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5. <u>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및 당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맞춤형 전략 개발</u></li> <li>26. <u>정보의 수집 및 관리</u></li> <li>27. <u>정보의 분석 및 판단</u></li> <li>28. <u>소관 업무 관련 제도개선안 등 마련</u></li> </ol>	<p>제 5 조 (기획조정국) 기획조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~2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2. <u>소관 업무 관련 제도개선안 등 마련</u></li> </ol>
<p>제 8 조 (인프라실) <u>인프라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산기획 및 계획수립</u></li> <li>2. <u>서버운용기기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) 도입 및 운영</u></li> <li>3. <u>인프라 관련 대외협력 업무</u></li> </ol>	<p>제 8 조 (미래전략국) <u>미래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집권 및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</u></li> <li>2. <u>정치 및 선거, 당무 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</u></li> <li>3. <u>정치 및 선거, 당무 관련 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사항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<u>정치 및 선거, 당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, 판단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 <u>기타 전략 수립 관련 사항</u></p>
<p>제 11 조 (청년국) 청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~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11 조 (청년국) 청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~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. <u>2030쓴소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 13 조 (국제국) 국제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~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. <u>주요당직자 연설문, 주요 외교현안 관련 논평 영문본 작성</u></p> <p>13~22. (생략)</p>	<p>제 13 조 (국제국) 국제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. <u>국제회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~2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5 조 (국민소통센터) 국민소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~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15 조 (국민소통센터) 국민소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~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. <u>약자와의동행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17 조 (노동국) 노동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노동계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노동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노동 관련 부당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노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	6. 소관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
<u>제 17 조 ~ 제 26 조</u> (생략)	<u>제 18 조 ~ 제 27 조</u> (현행과 같음)
제 27 조 (시·도당 사무처) ① 시·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·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 당직자를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다. ② 시·도당 사무처에 각종 팀을 둘 수 있다. <u>③ 시·도당 사무처에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을 둘 수 있다. &lt;삭제&gt;</u>	제 28 조 (시·도당 사무처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
<u>제 28 조 ~ 제 29 조</u> (생략)	<u>제 29 조 ~ 제 30 조</u>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부칙(2026. 2. 11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 「 당 규 」 윤리위원회 규정

현 행	개 정 안
제 8 조 (위원의 사임·해임 등)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, <u>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</u> 위원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	제 8 조 (위원의 사임·해임 등)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를 위반하거나 <u>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등</u>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장은 <u>해당 위원의 해임을 당 대표에게</u> 요청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<u>위원의</u>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	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<u>위원장의</u>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징계 사유) 4.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	제 20 조 (징계 사유) 4. <u>형사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된 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·지속적으로 그 출석을 거부한 때</u>
제 21 조 (징계의 종류 및 절차) ① 징계는 제명, 탈당권유, 당원권 정지, 경고로 구분한다. ②~⑥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 21 조 (징계의 종류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~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탈당한 자는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</u>
제 23 조 (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)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<u>행한다.</u>	제 23 조 (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)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<u>지체없이 행한다.</u>
제 24 조 (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)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징계안건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② 위원회는 <u>&lt;신설&gt;</u> 제1항의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, 1개월 이내에 <u>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.</u>	제 24 조 (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회는 <u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</u> 제1항의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, 1개월 이내에 <u>심의·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p>제 26 조 (재심청구)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(이하 '재심청구'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의결된 <u>사건</u>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 26 조 (재심청구) ① 징계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(이하 '재심청구'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의결된 <u>사안</u>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29 조 (원의결 취소)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<u>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</u></p>	<p>제 29 조 (원의결 취소)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원의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취소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</p>
<p>제 31 조 (표창구분 등)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<u>당 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 대표가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1등 공로표창&lt;삭제&gt;</u></p> <p>2. <u>2등 공로표창&lt;삭제&gt;</u></p> <p>3. <u>3등 공로표창&lt;삭제&gt;</u></p>	<p>제 31 조 (표창구분 등)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<u>당 대표, 원내대표, 정책위원회 의장, 사무총장, 시·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, 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시·도당위원장, 국회의원,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,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, 중앙당 국장급 이상의 사무처당직자 및 시·도당 사무처장 (이하 '당직자'라 한다)의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	<p>② 시·도당위원장, 국회의원,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,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, 중앙당 국장급 이상의 사무처당직자 및 시·도당 사무처장 (이하 '당직자'라 한다)에 대한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
<p>제 32 조 (표창 사유) ① 1등 공로표창은 당 발전에 영구히 기념비적 공로가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.</p> <p>② 2등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.</p> <p>③ 3등 공로표창은 당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.</p>	<p>제 32 조 (표창 사유) &lt;삭 제&gt;</p>
<p>제 33 조(표창권자) 표창은 당 대표가 행한다. 다만 2등 공로표창은 원내대표·정책위원회 의장·사무총장에게, 3등 공로표창은 시·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 33 조 (표창권자) &lt;삭 제&gt;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부칙(2026. 2. 11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 <p>제 2 조 (경과조치) 제21조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부터 적용한다.</p>

## 「 당 규 」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

현 행	개 정 안
<p>제 5 조 (구성 등) ①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위원장을 포함한</u>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	<p>제 5 조 (구성 등) ①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재적위원</u>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
<p>제 21 조 (구성) ①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위원장을 포함한</u>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	<p>제 21 조 (구성) ① 시·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<u>재적위원</u>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2026. 2. 11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

## 「 당 규 」 상설위원회 규정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 조 (상설위원회의의 위원 정수) 당헌 제45조의 상설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의 위원장(의장) 및 부위원장(부의장) 등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각 위원회별 시·도 기구 및 산하 기구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.</p>	<p>제 1 조 (상설위원회의의 위원 정수) 당헌 제45조의 상설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의 위원장(의장) 및 부위원장(부의장) 등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각 위원회별 시·도 기구 및 산하 기구의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~2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1~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8.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 50인 이내</u></p> <p><u>29. 2030쓴소리위원회 50인 이내</u></p> <p><u>30. 미디어위원회 50인 이내</u></p>
<p><b>제 2 조 (구성)</b>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당원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.</p> <p>1~1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 2 조 (구성)</b>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당원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.</p> <p>1~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6. 재외동포위원회</u></p> <p><u>17. 국제위원회</u></p> <p><u>18.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</u></p> <p><u>19. 2030쓴소리위원회</u></p> <p><u>20. 미디어위원회</u></p>
<p><b>제 24 조 (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)</b> ① <u>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·국군포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.</u></p>	<p><b>제 24 조 &lt;삭 제&gt;</b>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④ 기타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 의 구성, 소집 및 의사와 관련하여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한다.</p> <p>제 43 조 (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) ① 중앙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중앙여성위원장, 여성상임전국위원, 당 소속 여성국회의원, 여성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, 여성전국위원&lt;삭제&gt;,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,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, 시·도여성위원회 위원장,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을 <u>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,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을 포함하여 총 15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임명직의 30% 이상을 만 45세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43 조 (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단회의) ① 중앙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단회의를 둔다.</p> <p>② <u>위원장단 회의는</u> 중앙여성위원장, 여성상임전국위원, 당 소속 여성국회의원, 여성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,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,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, 시·도여성위원회 위원장,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.</p> <p>③ <u>위원장단회의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, 중앙여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장단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1조를 준용한다.</u></p>

연 행	개 정 안
<p align="center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 align="center">제 26 절 국민통합위원회</p> <p>제 83 조 (구성 및 기능) ① 지역·세대·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국민통합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</li> <li>2. 지역·세대 간 갈등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</li> <li>3. 사회통합 관련 단체·전문가 교류</li> <li>4. 지역·세대 및 계층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 추진</li> <li>5. 국민통합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지원</li> </ol>
<p align="center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 align="center">제 27 절 약자와의동행위원회</p> <p>제 84 조 (구성 및 기능) ① 사회적 약자를 보호·지원하고 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강화</li> <li>2. 불공정한 갑을 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문제의 개선</li> <li>3.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개발</li> <li>4. 현장 중심의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</li> </ol> <p>③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시·도당 산하</p>

연 행	개 정 안
	<p>에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두며, 각 당원협의회별로 지회를 둔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 85 조 (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)</p> <p>①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수석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,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은 시·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의 제청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시·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산하에 당원협의회별 지회를 두며,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시·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지회장 1인, 부회장 약간인으로 구성한다.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·도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 28 절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 위원회</p> <p>제 86 조 (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 위원회) ①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·국군포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</p>

연 행	개 정 안
	<p>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.</p> <p>④ 기타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위원회의 구성, 소집 및 의사와 관련하여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9 절 2030쓴소리위원회</p> <p>제 87 조 (구성 및 기능) ① 당 대표는 당의 발전 및 민심 청취를 위하여 2030쓴소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2030쓴소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 정책 및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</li> <li>2. 당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에 관한 건의</li> <li>3. 현장 여론의 수렴 및 당 지도부 전달</li> <li>4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</li> </ol> <p>③ 2030쓴소리위원회 산하에 시·도당 2030 쓴소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0 절 미디어위원회</p> <p>제 88 조 (구성 및 기능) ① 방송, 언론, 통신, 미디어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, 공정한 뉴스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디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미디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</p>

연 행	개 정 안
	1.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한 미디어 전략 및 대책 수립 2. 방송, 언론, 통신, 미디어 관련 정책 개발 3. 방송, 언론, 통신,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영입 4. <u>오보, 왜곡·편파보도</u> 등에 대한 대응 ③ 중앙당에 미디어위원회를 두고,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 및 시·도당 미디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<p><b>제 83 조 (실무지원·협조부서 및 간사)</b> 당 대표는 위원회 업무의 지원 또는 협조를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정위원회 - 중앙당 총무국(실무지원부서), 중앙당 총무국장(간사)</li> <li>2. 노동위원회 - <u>정책위원회 산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(실무지원부서),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담당 수석전문위원(간사)</u></li> <li>3~5. (생략)</li> <li>6. 중소기업위원회 - 정책위원회 산하 <u>산업통상자원위원회(실무지원부서),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(간사)</u></li> <li>7. 소상공인위원회 - 정책위원회 산</li> </ol>	<p><b>제 89 조 (실무지원·협조부서 및 간사)</b> 당 대표는 위원회 업무의 지원 또는 협조를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정위원회 - 중앙당 총무국(실무지원부서), 중앙당 총무국장(간사)</li> <li>2. 노동위원회 - <u>중앙당 노동국(실무지원부서), 중앙당 노동국장(간사)</u></li> <li>3~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중소기업위원회 - 정책위원회 산하 <u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실무지원부서)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(간사)</u></li> <li>7. 소상공인위원회 - 정책위원회 산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하 <u>산업통상자원위원회</u>(실무지원부서), <u>산업통상자원위원회</u> 수석전문위원(간사)</p> <p>8~9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하 <u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</u>(실무지원부서), <u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</u> 수석전문위원(간사)</p> <p>8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 위원회 - 정책위원회 산하 외교통일위원회</u>(실무지원부서), <u>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(간사)</u></p> <p><u>11. 미디어위원회 - 미디어국</u>(실무지원부서), <u>중앙당 미디어국장(간사)</u></p>
<p><u>제 84 조 (위임규정) ①</u>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장 제1절 <u>국책자문위원회와 &lt;신설&gt;</u> 관련해서는 위원장단 회의의 협의로, <u>제2장 제9절 내지 제11절의 여성위원회</u>, 청년위원회, 대학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각각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<u>제 90 조 (위임규정) ①</u>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장 제1절 <u>국책자문위원회와 제9절 여성위원회와</u> 관련해서는 위원장단 회의의 협의로, <u>제2장 제10절 내지 제11절의</u> 청년위원회, 대학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각각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부칙(2026. 2. 11)</p> <p>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

## 「 당 규 」 지 방 조 직 운 영 규 정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8 조 (시·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)</p> <p>① 시·도당에 당소속 시·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<u>기초의원협의회</u>를 두고 그 명칭은 {국민의힘 ○○시·도의회의원총회} 및 {국민의힘 ○○시·도기초의원협의회}로 한다.</p> <p>② <u>광역의원총회에</u> 원내대표(이하 "대표"라 한다) 1인, 원내부대표(이하 "부대표"라 한다) 수인을 두고, <u>기초의원협의회에</u> 회장 1인, 부회장 수인을&lt;삭제&gt; 두되, 대표 및 회장은 <u>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</u> 선출하고,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.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, <u>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&lt;삭제&gt;</u> 시·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대표는 <u>시·도의회</u>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&lt;추가&gt;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</p> <p>④ <u>광역의원총회 대표 및 기초의원협의회 회장</u> 사고시에는 부대표 및 부회장&lt;삭제&gt; 중 최다선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p> <p>⑤ 광역의원총회 및 <u>기초의원협의회</u>의 기능·운영·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·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</p>	<p>제 18 조 (시·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총회)</p> <p>① 시·도당에 당소속 시·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<u>기초의원총회</u>를 두고 그 명칭은 {국민의힘 ○○시·도의회의원총회} 및 {국민의힘 ○○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총회}로 한다.</p> <p>② <u>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총회에</u> 원내대표(이하 "대표"라 한다) 1인, 원내부대표(이하 "부대표"라 한다) 수인을 둔다. <u>대표는 해당 의원총회에서</u> 선출하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.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·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대표는 <u>시·도의회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</u>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<u>해당</u>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</p> <p>④ <u>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총회 대표</u> 사고시에는 부대표 중 최다선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p> <p>⑤ 광역의원총회 및 <u>기초의원총회</u>의 기능·운영·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·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⑥ 당 광역의회의장·부의장, 기초의회의장·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실시한다.	⑥ 당소속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장,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각 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.
<u>&lt;신설&gt;</u>	부칙(2026. 2. 11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「당규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

현 행	개 정 안
제 11 조 (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) ④ 공천신청은 중앙당 및 시·도당에 직접 접수하되,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.	제 11 조 (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) ④ 공천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.
제 12 조 (제출서류) ①~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 12 조 (제출서류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천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,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적 방식으로 연계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제 15 조 (자격심사)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, 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, <u>당 기여도</u> 등을 종합하는 평가	제 15 조 (자격심사)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, 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, <u>당 기여도 평가결과</u> 등을 종합



현 행	개 정 안
<p>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고,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.</p>	<p>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,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2026. 2. 11)</p> <p>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

## 「 당 규 」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 7 조 (권한)</b> ①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)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·감독한다.</p> <p>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광역단체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제3항 단서에 따라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기초단체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③ 각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. 단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</p>	<p><b>제 7 조 (권한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광역단체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<u>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·시·군의 기초단체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제3항 단서에 따라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기초단체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<u>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치구·시·군의 기초단체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5. <u>비례대표 광역의원(다만,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공개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연 행	개 정 안
<p>사유가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초단체장</li> <li>2. 지역구 광역의원</li> <li>3. 지역구 기초의원</li> </ol> <p>④ 각 시·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비례대표 광역의원</li> <li>2. 비례대표 기초의원</li> </ol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11 조 (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)</b></p> <p>④ 공천신청은 <u>중앙당 및 시·도당에 직접 접수하되,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 11 조 (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)</b></p> <p>④ 공천신청은 <u>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중앙당 및 시·도당에서 직접 접수한다.</u></p>
<p><b>제 12 조 (제출서류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 12 조 (제출서류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공천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,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적 방식으로 연계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 15 조 (자격심사)</b> ①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(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)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.</p> <p>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,</p>	<p><b>제 15 조 (자격심사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, 서류심사, 면접심사,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,</p>

현행	개정안
<p>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.</p>	<p>윤리위원회 심사결과, 현지 실태조사, 여론조사 결과, 당 기여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.</p>
<p>제 22 조 (경선방식 등) 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%, 여론조사 결과 50%를 반영하여 결정한다. 다만,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인단의 투표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중앙당 및 시·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하는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 22 조 (경선방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중앙당 및 시·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해 공개오디션 등의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할 수 있다. 이때 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 및 공개오디션 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 26 조 (가산점) ①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, 여성,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)의 최대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공직후보자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연수원에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)에 비례한 경선 가산</p>	<p>제 26 조 (가산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점을 부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다만, 경선 가산점 부여에 대한 세부 범위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, 이 경우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)의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의 득표율에 정량적 점수를 직접 가산하는 방식의 점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치신인, 여성, 청년 등의 경선 후보자에게는 최대 15점의 점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경선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 가산점의 총합은 최대 20점을 넘을 수 없다.</u></p>
<p>제 34 조 (지역구 후보자의 확정) ①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②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③ 중앙당 및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	<p>제 34 조 (지역구 후보자의 확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
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.</p>	<p>④ <u>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인 이상, 청년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, 시·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.</p>
<신설>	부칙(2026. 2. 11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「 당 규 」 ※ 단순 용어 수정

현 행	개 정 안
- 탈당권유	- 탈당권고
- 중앙대학생위원장	- 중앙당 대학생위원장
- 중앙대학생위원회	- 중앙당 대학생위원회
- 시·도대학생위원장	- 시·도당 대학생위원장
- 시·도대학생위원회	- 시·도당 대학생위원회